

2-5 서울 구로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·진동
·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
(환조 06-3-85)

◆ 재정업무 추진일지 ◆

- ◆ 2006. 7. 24 재정신청서 접수
- ◆ 2006. 7. 26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
- ◆ 2006. 9. 7 심사관 현지조사
- ◆ 2006. 12. 7 재정회의 개최
 - 위 원 : 남재우, 강정혜, 신동천, 신윤용
 - 심사관 : 환경주사 김금임
- ◆ 2006. 12. 7 재정문서 송달

1. 사건의 개요

<사건요지>

서울 구로구 ○○○동 ○○아파트에 거주하는 ○○○외 1,130명이 인근 교회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○○토건(주)과 ○○교회를 상대로 1,370,01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.

가. 당사자

- 신청인 : ○○○외 1,130명
- 피신청인 : (주)○○토건, ○○교회

나. 분쟁 및 처리의 경과

- 2005. 10. : 기존건물 철거 및 교회 건축공사 착공
- 2006. 4. 29 : 소음측정(소음측정업체)
- 2006. 5. 10 : 소음측정(관할 구청)
- 2006. 7. 24 : 재정신청
- 2006. 9. 7 : 심사관 현지조사
- 2006. 12. : 재정회의

다. 당사자 주장

(1) 신청인 주장

· 2005.10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작업 및 대지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06.3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소음·진동으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, 창문을 열지

못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

·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1,368,510천원, 소음측정의 러비 1,500천원 등 총 1,370,01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(2) 피신청인의 주장

· ○○토건(주)은 공사장 외곽에 높이 8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, 전기컴프레서를 사용 및 이동식 방음벽 설치·운영하였으며, 소음측정업체에 의뢰하여 수시로 소음을 모니터링한 결과 58~68dB(A)로 항시 기준이하였다.

· 또한, 자동세륜기 설치 및 1일 수차례의 살수를 하여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, 신청인들이 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하기에 최대한 부드럽게 민원인을 대하며 최대한 소음이 저감되도록 유지·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

2. 사실조사결과

가. 분쟁지역 개황

· 분쟁지역은 서울 신도림역에서 남서방향으로 약 740m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, 공사장 좌·우·후방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.

·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공사장의 남서쪽 방향으로 공사장 부지경계선과 폭 10~17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.

나. 피신청인 공사 현황

(1) 공사개요

· 피신청인의 『○○○ 선교센터 신축공사』는 ○○교회에서 시행하여 (주)○○토건에서 시공하는 공사로서 2005.12월~2008.12월(3년)에 걸쳐 약125억원(2006.12월까지 금액)을 들여 서울시 ○○구 ○○○동 ○○○-○번지 일원의 대지 약 10,303㎡의 부지위에 지하 6층, 지상 13층의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공사이다.

· 이 공사는 2005.10~2005.11월까지 기존 교회 건물(지상1층, 지하1층) 철거공사를 하였으며, 2005.11월부터 부지정리 및 기초 토공사가 시작 되었으며, 심사관 현지

조사시(2006.9.7) 공정율은 전체의 8.8% 정도였다.

(2) 사용장비

· 철거 공사시에는 굴삭기, 압쇄기, 덤프트럭 등이며, 기초 토공사시에는 크레인, 굴삭기, 선별기, 덤프트럭을 주로 사용하였다.

(3) 지질조사

·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심도 1.7~4.7m에는 매립층, 1.5~6.2m에는 퇴적층, 15.9~35m에는 풍화암층, 27.7~36.9m에는 연암층, 20.6~40.1m에는 경암층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.

(4) 방음·방진시설 설치현황

· 소음과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.10월에 시작된 철거공사 부터 방음벽(강판 높이 8m, 길이 447m)을 공사장 부지경계에 설치하였으며, 세륜·세차 시설, 이동식살수기 등을 설치·운영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다. 신청인 아파트 현황

· 신청인 아파트는 ○○산업(주)에서 2001.11월~2004.6월(약3년)에 걸쳐 서울시 구로구 ○○○동 649번지 일원의 대지 약 20,665㎡의 부지위에 지하 2층, 지상 25층의 아파트(6개동, 411세대)를 건축하여 2004.6.23부터 입주하였다.

· 신청인들이 2006.4.29일 소음측정대행업체인 「○○환경관리(주)」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802동 1502호 : 75.8dB(A), 802동 902호 : 76.9dB(A)
- 804동 1501호 : 73.6dB(A), 804동 902호 : 73.2dB(A)

라. 관할 행정기관의 공사현장 지도·점검결과

·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을 상대로 ○○구청에 야간작업 자제 및 소음발생 등으로 제출한 민원은 총 35건이었으며, 구로구청에서 신청인들의 아파트 베란다에

서 측정한 소음은 60~69dB(A)로 나타났으며,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2006.5.10일 : 69dB(A), 6.29일 : 65dB(A),
- 2006.7. 3일 : 60~61dB(A), 7.11일 : 66~69dB(A)

마.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

·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,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·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, 2005.10~2005.11월까지 철거 공사시 소음 60~72dB(A), 진동 10~43dB(V), 2006.11월~현재까지 기초 토공사 및 골조 공사시 소음 60~72dB(A), 진동 10~43dB(V)이하로 나타났다.

3. 인과관계 검토

가. 소음·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

· 2005.10월~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시 투입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소음도가 최고 72dB(A)까지 나타나고 있으며,

· 이는 『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(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1997)』 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(A)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(A)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,

·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 방해, 불안감,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
· 공사기간 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43dB(V)로 나타났으나, 이는 『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(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1996)』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(V)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.

나.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

· 피신청인들은 공사시 방음벽(높이 8m)을 설치하고,

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·세차시설 및 이 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하였으며, 공사기간 중 관 할구청의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·점검결과에서도 먼지 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었으며,

· 신청인들도 먼지피해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사회통념상 수인 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 니한다.

4. 배상수준 검토

가. 배상기준

· 신청인들이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 해에 대한 배상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 중 피해인정기준인 70dB(A)를 초과하는 기간(2005.10.5~2006.7.24, 실제 작업일 236일)으로 한다.

·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 제로 거주한 기간, 평가소음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

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평가소음도가 70dB(A)을 초과한 이홍배등 117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5,000원~300,000원으로 한다.

나. 배상액

·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4,385,000원, 재정신청경비 103,150원 등 총 34,488,150원으로 하며,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.

다. 결론

· 피신청인 (주)○○토건과 ○○교회는 부진정연대하 여 ○○○ 등 117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 34,488,150 원을 지급하되, 재정문의 정보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 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라. 재정결과에 대한 당사자 승복여부

· 불복

월간 '환경기술인' 구독 안내

문의 : 02-852-2291

정가 : 6만원(1년)

※ 온라인 송금 (지로납부가능)